

1)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(조특법 §18, 조특령 §16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○ (대상)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 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(30만\$ 이상)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 아래 요건(a)+③+④+⑤)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③ 자연·이공·의학계 학사 이상 ④ 국외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5 년 이상 연구 경력 ⑤ 과세연도 종료일(12.31) 기준 해 당 기업과 특수관계*가 없을 것 *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§1의2에 따른 친 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⑥ 연구기관,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<추 가> ○ (감면율) 10년간 50% ○ (적용기한) '23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○ (좌 동) ⑥ (좌 동) - 유망 클러스터*내 학교에 교 수로 임용되는 경우 * 연구개발특구, 첨단의료복합단지 ○ (좌 동) ○ '28.12.31.

<개정이유>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2)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(소득령 §16①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○ 일반 국외 근로자: 월 100만원 ○ 외항선·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: 월 30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확대 ○ (좌 동) ○ 월 500만원

<개정이유>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3)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(조특법 §30, 조특령 §27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 (대상) 청년*·노인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*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~34세로, 병역(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) 이행시 그 기간(6년 한도)을 연령에서 차감 ○ (감면율) 70% (청년은 90%) ※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○ (감면기간) 3년 (청년은 5년) ○ (대상업종)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 등 <추 가> ○ (적용기한) '23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○ (좌 동) ○ (좌 동) - 컴퓨터학원 등 ○ '26.12.31.

<개정이유>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4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
(소득법 §12, 소득령 §17의3, §18)

현 행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</p> <p>○ (대상) 종업원, 교직원,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*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</p> <p>* 「발명진흥법」 §2(2)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</p> <p>○ 연 700만원</p> <p>-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</p> <p>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: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</p> <p>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: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* 및 그와 특수관계**에 있는 자</p> <p>* 법인세법 시행령 §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**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</p>

<개정이유> 기술개발 유인 제고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5)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(소득법 §12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·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·보육수당 ○ (대상) 근로자(종교인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,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○ (한도) 월 1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상향 ○ (좌 동) ○ 월 20만원

<개정이유> 출산·양육 지원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6)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(소득법 §12(3)마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·수당 ○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○ 공무원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, 「별정우체국법」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소득 확대 ○ (좌 동) -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

<개정이유> 육아휴직 지원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7) 자녀세액공제 확대(소득법 §59의2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세액공제 ○ 적용대상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○ 공제세액(연간) - 1명: 15만원 - 2명: 30만원 - 3명: 30만원+2명 초과 1명당 3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○ 적용대상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○ 공제세액(연간) - 1명: 15만원 - 2명: 35만원 - 3명: 35만원+2명 초과 1명당 30만원

<개정이유>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(적용대상) '24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 (공 제 액)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